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동승표지 및 안전운행기록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현재 일반도로 기준 2배(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 수준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3배(승용자동차 기준 12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감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호자 동승표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부착하여야 하는 위치를 정함 (안 제36조의2, 별표14의2)
- 나.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함(안 제36조의3, 별지 제20호의2 서식)
- 다.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경찰서장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안 제37조의3)
-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 상향된 과태료 금액기준에 따라 감정기준을 정함 (안 별표39)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9월 중 실시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별표14의2와 같다.

②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우측 탑승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안전운행기록 제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에 따른다.

제37조의2제1항 중 “사람”을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동승한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확인증에 따른다.

제3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의 제공 절차 및 범위)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 교육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교육 시설명
2. 제1호의 위반이나 사고의 일시·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의 위반이나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3호 가목에서 10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점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53조의5	30

별표 39 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주) 2. ‘제11호와 제12호의’를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로 한다.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 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130,000 (140,000)	20	104,000 (112,000)
		승용자동차등	120,000 (130,000)	20	96,000 (104,000)
11의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90,000 (100,000)	20	72,000 (112,000)
		승용자동차등	80,000 (90,000)	20	64,000 (72,000)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기존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4의2]

보호자 동승표지(제36조의2관련)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고무자석으로 제작하여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 년월 20 .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통지서

1. 성명 : _____

2. 생년월일 : _____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기한	20 . 1. 1 ~ 12. 31
교육장소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육장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원하는 일시에 교육 신청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제 호		교육필 압인	교육필 압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 운영자용 ☐ 운전자용 ☐ 동승보호자용			
교육 이수자	성명	생년월일	
이수 과정 차기	주소	(전화번호 :)	
교육기간	과정명	이수일자	
년 1월 31일 ~ 년 12월 31일			
위의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 로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도로교통공단 로고
(주)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승 보호자용: 105mm×152mm[인쇄용지(특급) 120g/㎡]

유 의 사 항
1.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에 안전교육 확인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u>제36조의2(보호자동승표지) ①법</u> <u>제53조제6항에 따른 보호자동</u> <u>승표지는 별표14의2와 같다.</u> <u>②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u> <u>학버스 우측 탑승구 부근의 보</u> <u>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u> <u>제36조의3(안전운행기록 제출) 어</u> <u>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u> <u>이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안전</u> <u>운행기록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u> <u>지 제20호의2 서식의 어린이통</u> <u>학버스 안전운행기록에 따른다.</u>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따 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 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 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 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 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 하는 <u>사람</u>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 ----- ----- ----- ----- ----- ----- ----- -- <u>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u>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
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
다)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
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
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
버스 안전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통
지서에 따라 교육기한 및 교육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
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
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따른 동승한 보호자(이하 “동승
보호자”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

지에 일반적인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에 갈음한다.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르고, 운전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의 제공 절차 및 범위) ①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

-----.

⑤ -----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에 따른다.

제37조의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의 제공 절차 및 범위)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
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
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위반이나 사고의 일시·장소
및 위반 항목

3. 위반이나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법 제53조
의4에 따라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
한 정보를 해당 주무기관의 장
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 제53조의5를
----- 제5
3조의5-----

----- 교육시설명

2. 제1호의 위반이나 -----

3. 제1호의 위반이나 -----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